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단508496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10. 28.

판결 선고2016. 11. 1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655,839원 및 그 중 181,655,674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6. 접수 제123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6. 9.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 (2)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 (1) 원고는 2012. 7. 24.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보증번호 D,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3. 7. 24.(그 뒤 3번에 걸쳐 변경되어 마지막으로 2016. 7. 22.로 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2012. 7.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 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 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게 2015. 11. 24. 이후부터 이자의 납입을 연체하여 2015. 12.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6. 3. 25. 중소기업은행에게 182,258,164원(= 원금 180,000,000원 + 이자 2,258,164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602,490원을 회수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181,655,674원(= 182,258,164원 - 602,490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165원(= 602,490원 × 10% × 1/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1. 8. 29.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5,000,000원(= 170,000,000원 × 1/2)이다.

(2) 피고 B는 2015. 10. 5.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6. 접수 제123901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1,655,839원(= 잔존 대위변제금 181,655,674원 + 확정지연손해금 165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81,655,67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최종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게 2015. 11. 24. 이후부터 이자의 납입을 연체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6. 3. 25.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181,655,839원 및 그 중 181,655,6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85,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 즉 무자력 상태에 처하여 있음이 인정된다.

(다) 사해의사의 추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와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이 피고 C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B 앞으로 한 것인데, 진정한 소유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건물 40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8. 29. 접수 제86376호로 2011.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및 피고 C 명의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건물 401호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1. 8. 29. 접수 제86377호로 2011. 8. 2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4,7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강경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피고 C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상회복 의무 어느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채권자의 취소권행사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바,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석문

별지